
입 법 정 보

2018-15호



목 차



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
2.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
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
5.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7
6.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7
7.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8
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9
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11
1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12
1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3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3
14.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4
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5
1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6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7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7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림청).....	18
20.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8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19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9
23.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
24.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
25.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1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1
27.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2
29.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3
29.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3
3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4
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5

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6
3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7
3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7
3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7
3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8
3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9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30
3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0
4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31
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1
43.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4
44.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45.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4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6
4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7
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8
5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39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0
5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0
5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1
5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42
5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2
5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43
5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7
5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48
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9
6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50
6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50
62.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50

정부입법 예고

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8. 13. ● 마감일자 : 2018. 9. 27.
- 실용신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 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9조)
 -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2.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8. 13. ● 마감일자 : 2018. 9. 27.
- 특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개정「특허법」(법률 제 15582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38조)
 -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 나. 특허법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삭제(안 제120조의3)
 - 특허법 개정사항(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 반영을 위해 현행 규정 삭제함.

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8. 13.
 - 마감일자 : 2018. 9. 27.
-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조공학사에 대한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공포, 2018. 12.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 등 보조공학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등(안 제5조)
- 1)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한 보조공학 관련 교과목과 이수과목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 보조공학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시험계획 공고, 필기시험 과목, 합격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8. 13.
 - 마감일자 : 2018. 9. 27.
-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조공학사에 대한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공포, 2018. 12.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 절차와 보수교육 실시 시기와 방법 및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안 제10조 신설)
-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 신청서에 보조공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안 제11조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다.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안 제12조 신설)

- 보조공학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발급 신청을 받으며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함.

라.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안 제13조 신설)

-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5년 이상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해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안 제14조 신설)

-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계획서와 매년 3월 31일까지 보조공학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안 제15조 신설)

-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등 보수교육 관계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5.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8. 13.
- 마감일자 : 2018. 9. 27.
-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19년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연착륙 및 올바른 농약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을 도입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 신설)
 - 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 대해 사용방법·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6.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8. 14.
- 마감일자 : 2018. 9. 27.
-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79호, 2018. 4.17.공포, 2018.10.18.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했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안 제96조)
 -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 및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 반영 (안 제102조)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류 작성은 ‘영어’ 로만 하는 것은 출원인의 편의 측면에서 일몰규제로 그대로 유지하여 3년후 재검토하기로 하며,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 보유인력 요건은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비규제 대상으로서 삭제함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 (안 제24조)

-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7.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8. 14. • 마감일자 : 2018. 9. 27.

-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상표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81호, 2018. 4. 17.공포, 2018. 10. 18.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 및 정리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및 정비(안 제96조, 제97조, 제98조)

-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밀유지 및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 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이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을 정비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 반영(안 제101조)

- 상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최소한의 제재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몰 해제하고,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는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규제대상이 아님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안 제25조)

-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8. 16.
- 마감일자 : 2018. 9. 27.

○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4920호, 2018.10.25. 공포)됨에 따라, 내진보강대책 추진 상황 점진 평가의 절차 방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 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지진방재정책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안 제7조, 제7조의2)

- 1) 기상청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2)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하고 위촉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지진 화산방재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안 8조의3, 8조의4, 8조의5)

- 1) 지진 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지진 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 구성(안 8조의6, 8조의7)

- 1) 전문위원회 자문사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안 제10조)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물류 시설 중 물류터미널

-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
- 마.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안 11조)
 - 1)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 평가의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바. 인증운영위원회(안 11조의3)
 -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사.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11조의4)
 -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요건과 인증기관 지정신청, 지정 및 취소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아. 인증대상 기준 및 절차(안 11조의5)
 - 1) (인증대상)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물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대상으로 규정
 - 2) (인증기준) 내진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 및 등급을 정하도록 규정
 - 3) (인증절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절차, 심사기간,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자. 과태료(안 16조)
 -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를 규정

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8. 16.
 - 마감일자 : 2018. 9. 27.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소방시설공사 공사실적증명서 발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소방시 설업의 육성을 달성하고자 함.
- 아울러 소방청장이 방염처리 수요자에게 견실한 방염처리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366호, 2018. 2. 9. 공포)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여 방염처리능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2조 제1항)

- 1)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이 정착됨에 따라 등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및 기술자격수첩의 사본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제출하지 않도록 함.

나. 소방기술자 배치시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기재 제도 폐지(안 제12조 제4항)

- 1) 기존에 소방기술자 배치 시 배치와 관련된 사항을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재발급하던 것을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처리가 가능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고 함.

다.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정하고(안 제21조의2 신설), 방염처리능력 평가방법 및 공시 방법 등을 정함(안 제21조의3 및 별표 제3의2 신설).

라. 공사실적증명서 발행자 범위 확대(안 제22조 제1항 제1호나목)

- 1)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첨부서류로 공사실적증명서가 필요한데 하도급 공사의 경우 발주자와의 연락 단절 등의 사유로 실적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발생.
- 2) 이에 발행자의 범위를 발주자에서 수급인까지 확대함으로써
- 3) 투명한 시공능력 정보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질서를 구축하고 적정 시공업체를 선정하려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 함.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8. 16.
- 마감일자 : 2018. 9. 27.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차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농지 임대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농지 전용 절차상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 처분 시 소유권 이전 대상 명시(안 제10조)

- 1)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는 처분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

나.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안 제23조)

- 1)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의 임대차 허용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한 농지의 임대차 허용

다. 농지 최단 임대차 기간 연장 임차농 보호 규정 보완(안 제24조의2)

- 1)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최단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라. 용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 규정 보완(안 제32조)

-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의 위임근거 마련
- 2)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에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를 포함

마.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적용 기준 신설 (안 제37조의2)

- 1)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농지 전용 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그 농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신설

1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8. 17.

● 마감일자 : 2018. 9. 27.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1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8. 17. ● 마감일자 : 2018. 9. 28.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조정·심의 기능 강화, 로봇윤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및 로봇 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안 제3조의2)
 - 1)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
 - 나.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의5 신설)
 - 1) 로봇윤리자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
 - 다.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권고(안 제5조의2 신설)
 - 1) 로봇제품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을 신설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8. 17. ● 마감일자 : 2018. 9. 27.
-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새롭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며,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이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4)

- 1) 공정위의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②출석요구 불응, 조사 공무원의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을 기존 1천만원에서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범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 (→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범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법상 부과한도 상향비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
-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범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범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범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나.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 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 1)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18.6.12.에 공포된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범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범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다.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안 제51조)

- 1)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더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규정 (→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4.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8. 17.
- 마감일자 : 2018. 9. 2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직업안정기관의 장) 이름으로 행하여진 「직업안정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권한 없는 기관의 행정처분으로 무효라고 재결을 함에 따라 권한의

위임 근거규정이 흠결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사업정지, 등록·허가의 취소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 마련

- 1) 현행 「직업안정법」 제3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로 신고·등록·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위법이나 결격사유 발생 시 영업정지를 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그러나 사업의 영업정지 및 등록·허가의 취소는 현실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이러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할 필요
- 3) 다만, 처분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있는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은 권한의 위임 범위에서 제외

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8. 20.
- 마감일자 : 2018. 10. 1.

○ 현행 법령에서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시 개선명령만 부과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하고 배출허용기준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개정법률 인용 규정 반영(안 제19조제1항)

- 주민생활, 국민경제, 공익 등의 우려로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7조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근거 조항을 법 제16조제2항에서 법 제16조제1항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과제는 물론 전년도 추진실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8. 20.
- 마감일자 : 2018. 10. 1.

○ 현행 법령에서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시 개선명령만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하고 배출허용기준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설정 등 행정처분 부과 및 이행 관련 규정 정비

- 1) 배출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이거나 기준초과 수준이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를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로 규정(안 제8조제1항 및 별표4 제3호)
- 2)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의한 개선명령에 대하여 최초 개선기간 및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부과가 가능한 총 개선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조정(안 제8조제3항)
- 3) 법 제16조 개정내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만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중지로 변경하는 등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제11조 별표4)

나.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신고 변경신고의 처리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그 밖의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8. 20. • 마감일자 : 2018. 10. 1.
-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8. 20. • 마감일자 : 2018. 10. 1.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산림용 버섯 종균을 판매할 수 있는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을 완화하는 한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17.5.17)된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녹색자금 우선 지원 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요건 완화(안 제12조)
 -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기준 중 해당분야 종사기간을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 나.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우선 지원 기관에 추가(안 제61조)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에서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는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추가함.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8. 20.
- 마감일자 : 2018. 10. 1.
- 「산지관리법」에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에 대해 복구비 예치를 면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를 포함하는 입목벌채·굴취사업 신고에 대해 복구비의 예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안 제5조제6항)
 -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가 포함된 입목벌채 등 신고사업의 복구비 예치여부 확인규정 삭제(안 제46조제3항)
 - 「산지관리법」에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에 대해 복구비 예치를 면제함에 따라, 입목벌채·굴취사업 신고 시 복구비 예치여부 확인규정 삭제
 - 다.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의 유의사항 변경(안 별지 제35호서식)
 - 「산림자원법」 개정(법률 제14987호, 2017.10.31. 공포, 2018.5.1. 시행)에 따른 벌칙 변경사항을 반영

20.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8. 20.
- 마감일자 : 2018. 10. 1.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평가대상사업의 구체화 용어의 명확화 평가결과 환류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8. 20.

• 마감일자 : 2018. 10. 1.

- ‘K-9 자주포 사고’를 계기로 군복무중 부상을 입거나 발병한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 부상을 입거나 발병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급미달 경상이자 지원 확대(안 제20조 제1항 개정)

-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나, 상이등급 미달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상이자에 대하여 상이처만 국비진료가 가능하였으나, 상이처 외 질환도 보훈병원에서 감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자 함.

나. 비상이 중증 난치성 질환자 지원 확대(안 제20조제4항 개정)

- 군복무 중 발병한 비상이 중증·난치성 질환(238개 질환)에 대하여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다. 제대군인 간병비 지원(안 제20조 제6항 신설)

- 군복무중 공무상 상이(질병)를 입고 입원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제대군인이 치료 중인 부상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여 재활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8. 21.

• 마감일자 : 2018. 10. 1.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18.4.17 공포, ’18.10.1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에너지진단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현행 제4조부터 제11조)
-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업무 대행기관 확대(안 제11조의2)
 - 법에 따라 위임된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등 수요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 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 완화 (별표4)
 - 기존 기술자격(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사 등) 외 신재생(태양광)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기능장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 완화

23.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8. 21. ● 마감일자 : 2018. 10. 1.
- 공연장 피난안내도 설치 또는 공연 시작 전 피난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내실 있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4.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8. 21. ● 마감일자 : 2018. 10. 1.
- 공연장 피난안내도 설치 또는 공연 시작 전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켜야 함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피난안내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정함 (시행규칙 별표2 신설)

25.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8. 22. ● 마감일자 : 2018. 9. 10.
-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여객선의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는 기준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항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하며, 해상운송사업자가 면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와 여객 승선확인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고객만족도 평가위원의 해촉 규정 도입(안 제6조의2)
 - 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수리 권한 위임(안 제27조)
 - 다. 면허기준 미달 관련 과징금 상향 조정(안 별표2)
 - 라. 안전관리 관련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3)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8. 22. ● 마감일자 : 2018. 10. 1.
- 성장주기가 빠른 첨단업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도권 내 입지가 가능한 첨단업종 개정
- 주요내용
 - 가. (분류번호 현황화) 현재 첨단업종 분류번호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 현황화하고자 함
 - 나. (기술발전 현황 반영)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첨단업종에 대한 수요가 높은 업종을 추가하는 등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첨단업종의 분류번호 및 적용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27.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8. 23.

● 마감일자 : 2018. 10. 2.

○ 도서지역 등에서 실시하는 먹는물 수질검사의 시료채취를 관계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검사 결과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먹는물수질검사 기관등의 지정 신청에 따른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인의 정기교육 신설(안 제17조제1항)

-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 제조업의 품질관리인이 품질 관리교육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을 지정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의 요구 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35조제3항, 제4항, 제5항)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을 신청한 자에게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하거나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추가 지정(안 제35조제8항)

- 국방·군사시설의 먹는물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육군 예방의무근무대 및 수도법에 따라 정수장수질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권역별 지사를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함.

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안 제36조제2항)

-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최소 10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수처리제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추가(안 별표 3)

- 최근 수처리제 2종이 추가 지정·고시됨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제조설비의 종류를 신설함.

바. 먹는물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개선(안 별표 8)

-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의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실험실 시설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먹는물 시료채취 종사자에 대한 예외규정 허용(안 별표 8의2)

- 도서지역 등의 수질검사와 지도·점검, 인·허가 등과 관련한 수질검사의 경우 일정 교육을 이수한 관계공무원이 먹는물 수질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29.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8. 23.

● 마감일자 : 2018. 10. 2.

○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신설(안 제4조제1항, 별표 1)

-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도록 규정

29.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8. 23.

● 마감일자 : 2018. 10. 2.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참여 통로를 제도화

○ 주요내용

가. 국민신청실명제의 도입(안 제63조의3 제1항 제5호)

- 1) 국민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검토 절차를 거쳐 사업을 선정,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2) 국민의 참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정책추진이 보다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8. 23.

● 마감일자 : 2018. 10. 2.

-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서비스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안 제2조, 제31조 등)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 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서비스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의3)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서비스 종류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장소, 목적, 내용, 담당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
- 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20조의4)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공공기관이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기관으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규정함.
- 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사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45조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 공단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8. 23.
 - 마감일자 : 2018. 10. 2.
-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욕구, 환경 등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안 제2조, 별표1 등)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행 제1급~제3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제4급~제6급)’으로 구분함.
 - 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조사서식 등 규정(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조사절차 등이 시행규칙으로 위임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욕구, 환경 등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의 생활수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사 시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규정함.

다. 보행상 장애 세부기준을 고시로 위임(안 제28조)

-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행상 장애 기준을 별도로 상세 기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규정(안 제44조의2)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거주시설 이용절차 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함.

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8. 23.

● 마감일자 : 2018. 10. 2.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주차장법 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안 제12조의14 신설)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를 기계식주차장 사고 원인 등의 판정, 사고조사,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사고방지 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권고로 정함.

나.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2조의15 신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

다. 위원의 해촉 등(안 제12조의16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 규정함.

라.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의17 신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

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명시함.

3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8. 23.
- 마감일자 : 2018. 9. 3.
- 유치원 교지 교사의 소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 사립유치원의 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통한 교사 교지 확보 허용(안 제7조단서 신설)

3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8. 24.
- 마감일자 : 2018. 9. 3.
-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전자송달 방법 및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대한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근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본인확인 인증수단을 법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관련 사안을 반영하려는 것임.

3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8. 24.
- 마감일자 : 2018. 10. 4.
-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시험기관 인정을 삭제하고, 외모상 흠터가 생긴 경우에 대한 보험배상액의 남녀기준을 통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놀이시설 바닥재의 중금속 등 검사가 환경부로 이관(' 17. 1. 1.)
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요건에서 시험기관 인정 부분을 삭제(제5조)
- 나. 혹한 등의 기후적 요건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물이용놀이거구에
대한 검사를 최대 3개월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 제8조)
- 다. 정기시설검사 기간 연장 및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제8조)
 - 1)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을 ‘직전 검사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 1개월간’에서 ‘2개월간’으로 변경
 - 2)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내에 검사를 한 경우 합격판정의 유효
기간 기산일을 ‘직전 검사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함
 - 3)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외에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합격판정일’로 함
- 라.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감독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와 방법
규정(제8조의3)
- 마.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제13조)
및 외모상 흉터에 대한 보험배상액의 남녀기준 통일(별표 7)
- 바. 그 외 용어 및 서식 정비

3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8. 24.
- 마감일자 : 2018. 10. 4.

-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
기관 지정 신청서류 중 시험기관 인정서를 삭제하고, 수상레저법 개정
등에 따른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추가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중 ‘시험기관 인정서’ 삭제(안 제2조)
 - 1)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에 필요했던 시험검사기관 인정서가 불필요해짐
- 나. 놀이시설 안전검사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14조, 제16

조, 별지 제12호, 제15호)

1)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의 보급에 따라 불필요해진 시설배치도, 설치장소 약도를 안전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제외다. 물이용 놀이시설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자격 추가(안 제16조의2)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래프팅가이드 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물이용 놀이시설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자격에 반영

2) ‘수영장협회’를 공식명칭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로 수정
라.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교육의무 유예(안 제20조)

1) 시설보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장기간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교육을 유예 할 수 있도록 함

마. 안전관리지원기관 외의 기관(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으로 인정하는 예외조항 삭제(안 제20조)

1) 교육인정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음에 따라 해당 조항 불필요

3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8. 24.

● 마감일자 : 2018. 10. 4.

○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하여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의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고, 예외적으로 개별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물납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해당 증권에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본환원율 결정 시 고려사항 추가(안 제27조 제4항)

나.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 산출 근거 마련(안 제29조 제2항)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8. 24.

• 마감일자 : 2018. 10.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의 제정 당시에 비해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민사적·형사적 규율수단을 확충·보완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며, 피심인의 방어권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법체계 및 구성의 재정비를 통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3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8. 27.

• 마감일자 : 2018. 10. 8.

-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시 갖추어야 할 시설 중 파쇄시설과 소각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임을 명시하여 그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시설검사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 개정(안 별표3)

-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시 갖추어야 할 시설 중 파쇄시설과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포함)이 폐기물 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임을 명시함.

나. 폐가스류처리업 등록기준 개정(안 별표3)

- 폐자동차에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고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폐가스류 회수기 및 회수용기를 자동차폐차업자가 설치하도록 함.

4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8. 27.
- 마감일자 : 2018. 10. 8.
-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 중 점포에서 진열 판매 및 저장 또는 운반하는 화장품, 방향제 등과 병원 및 약국에서 진열 판매 및 저장하는 의약품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류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인체 안전성 및 용기 저장 등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으며, 유통 특성상 소형 용기에 저장되고, 용기 화재 시에도 일반 소화기 등으로 진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등의 물품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하는 한편, 위험물 시험기관에서 시험 판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주유취급소의 이동저장탱크의 급유량 확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화장품 등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안 별표 1 비고 제11호 단서 신설)
 - 나. 위험물 판정 주체의 명확화(안 별표 1 비고 제26호 후단)
 - 다.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의 급유량 확대(안 별표 3 표 제1호)

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8. 27.
- 마감일자 : 2018. 9. 10.
- 2019년도 예산안에 맞추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한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을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 삭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법령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준보조율 조정(시행령 [별표1] 개정)
 - 1) 생활자원 회수센터의 공동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단독시설 설치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기준보조율을 명시함.

- 2) 지방자치단체 안전투자 책임성 확보,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기준보조율에 차등을 둠.

나.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삭제 및 용어 정비(시행령 [별표2] 개정)

- 1)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인 경로당 운영 사업 중 내역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을 시행령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 삭제함.
- 2) 불합리한 차별적 법령용어 정비를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수정함.

4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8. 27.
- 마감일자 : 2018. 10. 8.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범정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갑질’에 대한 개념 및 이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 제4조)

- 1) 종전에는 의원 본인, 배우자 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안전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과 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안전심의 등 관련활동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함
- 2)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로써 해당의원을 안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4조의2)

- 1)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4조의3)

-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등 직무와 관련한 특정 외부활동을 금지함

라. 가족 채용 제한(안 제4조의4)

- 의원이 소속 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포함),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4조의5)

-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

바.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8조의2)

-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의원의 알선·청탁과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에 민간 부문을 포함함으로써, 의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행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함

사.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안 제10조의2)

-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아.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16조)

- 의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안 제17조의2)

- 의원이 자신의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를 금지함

43.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8. 27. ● 마감일자 : 2018. 10. 8.
-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투자심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기심사 일정변경, 재심사 대상 기준 변경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범위 구체화(안 제3조)
 - 1) 홍보관 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분리
 - 2)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업범위를 자체심사의 경우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으로, 중앙의뢰심사의 경우 ” 10억원 이상 “에서 ” 5억원 이상 “으로 확대
 - 나.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예외 규정 추가(안 제3조)
 - 다. 중앙투자심사 심사시기 정례화(안 제4조)
 - 1) 정기심사를 “4월20일까지”에서 4월30일까지(1차), 9월30일까지(2차)로 변경하여 정기심사 완료기한을 변경하고, 자료 제출 기한은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자체투자심사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7조)
 - 1) 내실 있는 중앙투자심사 진행을 위해 자체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매회 투자심사 의뢰 시 제출하도록 제출기한 변경(기존 12월 31일 일괄제출)

44.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8. 28. ● 마감일자 : 2018. 10. 8.
-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으로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영자의 범위,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지정방법·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안 제44조의2)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규정함

나.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안 제44조의3, 별표 8의2)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 및 지정 방법을 정함

다.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안 제44조의4, 별표 8의3)

- 교통안전담당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실시방법 등을 정함

라. 고유식별번호 처리 가능 사무에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 관련 사무 추가(안 제47조의2)

마.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업무 및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48조)

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안 별표9)

-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45.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8. 28.
- 마감일자 : 2018. 10. 8.

-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으로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 및 교육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절차(안 제27조)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지정해제, 퇴직 시 신고 방법 등을 규정

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절차(안 제27조의2)

-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신청 방법 등을 규정
- 다.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 및 교육신청 서식 신설(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

4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8. 29.
- 마감일자 : 2018. 10. 8.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요양급여의 원칙을 정비하고,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또는 조정 신청자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 검토절차’ 이외에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다각도의 권리구제방안과 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허가 면제 제품 신속도입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환자(암환자) 대상 약제 처방·투여 범위가 별표1제3호가목(2)의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의 사용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도 관련 단체의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요양급여의 원칙을 정비 (안 제1조의2 신설, 별표 1 제1호가목 삭제)
- 나.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심의 절차 마련(안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 및 제10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 다. 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긴급도입 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 제품 신속도입 절차 마련(안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라.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용범위 외 처방 투여에 대한 심의기관 확대 등(안 별표 1 제3호가목(3))
 -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용범위 외 처방 투여에 대하여 심평원장의 사후승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 심의

- 기관에 관련 단체의 전문위원회를 포함
- 마. ‘치아우식증’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치아우식증(충치)’로 개정(안 별표2 제3호 라목)
- 바. ‘이의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치료재료 평가신청서 변경 및 일부 내용을 상세하게 변경하여 개정(안 별지 제16호서식)

4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8. 29. • 마감일자 : 2018. 9. 13.
-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고난이도 시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혈모세포 이식 외에도 시술기관, 인력, 장비 등을 별도 고시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가의 치료비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별도 고시의 형태로 시술기관, 인력, 장비 등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안 제5조제2항 개정)

4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8. 29. • 마감일자 : 2018. 10. 8.
- 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포함하고, 지역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미성년자 및 내국인과 동일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범위를 조정하여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강검진 대상에 20 ~ 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을 포함(안 제25조)
 - 1) 20 ~ 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보험료 면제대상 미성년자 범위 조정(안 제46조)

- 1) 현재 미성년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납부 의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2)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합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합이 연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도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3) 보험료 면제대상 미성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내국인과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는 외국인의 범위 조정(안 제76조의4)

- 1)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 거주(F-2)인 외국인은 친척방문, 가족동거,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영주(F-5), 결혼이민(F-6)과 체류 특성이 상이함에도 영주(F-5), 결혼이민(F-6)과 동일하게 내국인과 같은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2) 내국인과 같은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자를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한정함
- 3) 체류특성에 맞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 및 외국인들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8. 29.
- 마감일자 : 2018. 10. 8.

- 4대 보험별로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야기 되고 있는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에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의 하나인 ‘재해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목적의 입국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신설(안 제51조제4호)
- 나.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안 제61조의2)
- 다.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보험료등 체납액 조회 및 납부 확인에 관한 업무 추가(안 제64조)
- 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추가(안 별표9)

5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8. 29.
- 마감일자 : 2018. 10. 8.

○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의무화 및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야영장 안전 및 위생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가족여행이나 여가 활동의 형태로 야영(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종 야영 편의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야영장업 등록 시 전기, 가스, 수질 등에 대한 점검(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야영장 안전 및 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안 제2조 제2항, 제4항)

- 나.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 야영장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안 제18조 제6항)
- 다. 야영장의 화재, 전기, 가스, 수질 등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자 이외에 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안 별표 7)
- 라. 전기·가스 및 수질검사 등 사전확인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6호 서식)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8. 29.
 - 마감일자 : 2018. 9. 10.
-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구입 시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 구입 시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의 35퍼센트에서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40퍼센트에서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함

5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8. 30.
 - 마감일자 : 2018. 10. 10.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위임·위탁규정을 개정하여 농업생명자원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권한 등의 위임·위탁기관 조정(안 제13조 및 제14조)
-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가책임기관(법 제8조) 및 국가점검기

관(법 제13조)으로서 농업생명자원과 관련된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등에 위임·위탁하던 것을 상위기관장인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위탁하여 농업생명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모함

- 2)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책임기관(법 제8조) 및 국가점검기관(법 제13조)으로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권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 위임·위탁하던 것을 수산생명자원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해양생명자원에 대해서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위탁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모함.

5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8. 30.
- 마감일자 : 2018. 10. 10.

- 시험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등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하고,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시 인력에 관한 요건 중 분야, 자격증 요건을 완화하며,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업무범위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등 서식에 지정사항 항목별 수수료를 표시하고 시험 검사 성적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의 근거 보완 및 그에 따른 신청서 서식 정비 (안 제4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별지 제12호, 제14호, 제18호 서식)
- 나.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업무범위 누락사항 보완(안 별표1)
- 다. 시험 검사기관 인력 요건 중 자격 요건에서 관련 분야 삭제 및 관련 종목의 자격증 확대(안 별표2)
- 라.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신청 항목별 수수료 표시(안 별지 제1호서식~제5호의2, 제14호 서식)

마. 시험 검사 성적서에 식용란 성분규격 검사 결과 기재 방법 안내
(안 별지 제13호 서식)

5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8. 8. 30.
- 마감일자 : 2018. 10. 10.

○ 주요내용

- 가. 국가중요시설 방호와 관계된 군·경·행정기관의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경비·보안활동’과 ‘핵심노드’에 대한 설명을 용어의 정의에 명시하려는 것임.
- 나. 통합방위작전의 해상 관할구역은 특정경비해역과 일반해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지휘관을 구분하려는 것임.
- 다. 군과 지자체에서 상호 협조 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활용중인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5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8. 31.
- 마감일자 : 2018. 10. 1.

- 시·군·자치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의를 증진하여 지역의 공동 문제에 대한권역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증진과 위상 제고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시·도별 지역협의체 설립근거 마련(안 제102조)
 - 지방 4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도별 지역협의체를 4대 협의체의 하부기구로 설립하는 법적 근거 마련
- 나.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관련 규정 삭제 및 조례 위임(안 제33조)
 -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 제고 및 자기책임성 강화

다. 행정사무 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안 제42조)

- 위임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

라.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공표 시점 구체화(안 제22조)

-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공표 시점을 감사종결 이후 10일 이내 공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 방지

마. 관련 법령 폐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0조, 제73조, 제117조)

- 1) 지방분권 촉진에 따른 특별법 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을 폐지하고, 두 법률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 13.5.28.)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2)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 14.1.1.)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5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8. 31.
- 마감일자 : 2018. 10. 10.

- 국민들의 혼란 방지와 효율적인 항만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 고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등의 목적으로 기항하는 크루즈선에 대한 보안검색을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항만보안 감독관제를 신설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 마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48조 제3호·제4호 일부개정)

- 1) 항만시설 신규 개장 시 보안시설·장비 및 선박과의 원활한 연계활동을 위한 시험운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나 제도 불비로 개선 필요
- 2) 항만시설에 대한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고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 받도록 하며, 부정 한 방법으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 받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고 항만시설을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항만시설적합확인서 관련 벌칙을 준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 마련으로 임시운영시설에 대한 항만 보안 강화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편의 제고

나.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에 대한 재심사 제도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 1)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결과에 대한 항만시설소유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해 현행 선박보안심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심사 제도 도입
- 2)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심사 집행 및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항만시설 보안심사 등에 불복 시 행정의 자기통제와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행정소송 제기 전행정심사(재심사) 전치주의를 규정
- 3)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마련으로 국민의 권익보호 기대

다. 크루즈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도 개선(안 제30조의2 일부개정)

- 1) 「크루즈산업법」의 제정·시행(2017.6.3.)에 따라 국내 항만에 관광 등을 목적으로 일시 기항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상여객운 송사업(크루즈)이 신설됨에 따라 모항을 전제로 시행중인 현행 보안검색 제도 개선 필요
- 2) 현행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은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 시설소유자가 실시하고 있으나,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국내 항만에 기항한 경우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은 국제협약의 보안기준(ISPS-Code)에 따라 상호 간에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안합의사항을 정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 선박보안책임자가 보안합의서를 작성·교환하는 경우 국제항해 선박소유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3) 국제협약의 보안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보안

검색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기항한 크루즈선의 선사 및 승객 등의 이중 보안검색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크루즈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 국가보안기관의 보안순찰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 1) 마약·금괴 밀수, 권총 및 실탄 발견 등 최근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는 항만보안 위협요소에 적극 대응 및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로서 통제구역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국가보안기관의 보안순찰
필요
- 2) 국가보안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보안사건 예방을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순찰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3)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항만보안 위협요소 등에 대한 예방을
통한 항만보안 강화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대

마. 항만시설 등에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근거 마련(안 제33조 일부개정)

- 1) 항만시설 및 국제항해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불명확하고,
경호업무 등 무기소지가 필요한 특정업무 수행자에 대한 무기
반입·소지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며, 사진 이외에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휴대폰·차량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제한구역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동영상 촬영에 대한 제한 근거 필요
-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이나 항만시설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무기 반입
· 소지 근거를 마련 하고,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를 동영상을 포함하여 ‘촬영금지’로 변경
- 3) 항만시설과 국제항해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히
하고,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무기소지 근거 마련과 제한구역에
대한 동영상 촬영 제한 근거 마련으로 불필요한 분쟁 및 혼란
방지

바. 항만시설보안심사관 임명 근거 마련(안 제37조제6호 신설)

- 1) 현행 선박보안심사관에 대한 임명 근거와 자격요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항만시설보안심사관 관련 규정 미비로 개선 필요
- 2) 보안심사관의 업무에 항만시설보안심사·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추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시설보안심사관 임명 근거 마련
- 3)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전문성 강화로 원활한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 수행을 통한 항만보안 강화 기대

사. 항만시설 보안훈련 대상자 명확화(안 제39조 일부개정)

- 1) 국제협약의 보안기준(ISPS-Code)에서 규정한 항만시설 보안훈련의 목적은 ‘모든 보안등급에서 항만시설 보안업무 종사자가 할당된 보안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하고 발생 가능한 보안취약요인을 식별’ 하기 위함이나 현행 보안훈련 대상을 ‘항만시설의 종사자’로 규정하여 일반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선 필요
- 2) 항만시설소유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실시하는 보안훈련의 대상자를 현행 ‘항만시설의 종사자’에서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업무 종사자’로 변경
- 3) 항만시설의 보안훈련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란 방지

아. 항만보안 감독관 제도 마련(안 제41조 일부개정)

- 1)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국제항해선박, 항만시설 및 사업장에 출입·점검하게 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의 명칭을 유사 법령 사례에 따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항공보안 감독관(항공보안법 제33조), 철도안전감독관(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해사안전감독관(해사안전법 제58조)

- 2)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고 예방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항만보안 감독관을 임명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항만보안 감독관의 자격·지정·운영 및 점검 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3) 항만보안 감독관 제도와 자격기준 등의 근거 마련으로 항만보안 지도·점검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기대

자.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안 제42조 일부개정)

- 1)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 고시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요율을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승인시 다시 협의토록 하여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있으며, 항만시설보안료를 대납한 자에 대한 대납경비 지급 근거 미비로 개선 필요
- 2)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하고자 하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한꺼번에 대납한 경우 대납경비 지급 근거 마련
- 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관련 중복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항만시설보안료 대납경비 지급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보안료 징수를 통한 항만보안 재원 마련 기대

5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8. 31.
- 마감일자 : 2018. 9. 13.

- 「경제자유구역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6.29 ~ 8.8)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을 국가 균형발전, 고용창출 규모, 경자구역별 중점투자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자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15조)

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에

-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를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2)
- 다. 국유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감면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안 제16조)
- 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22조)
- 마. (추가 반영)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외투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와 국 공유 재산의 수의계약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일반기준과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를 세분화

5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8. 31.
- 마감일자 : 2018. 10. 10.
- 사전통지제를 도입하여 수거·검사·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수리간주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며, 수입신고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등 신설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9조의3제1항, 제2항)
 - 나. 신고 간주제 도입(안 제19조의3제5항, 제6항, 제24조제5항, 제6항)
 - 수입검사 신고의 처리와 목재생산업 변경등록 신고를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 다.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검사 시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2조제2항, 제3항)
 - 라. 수입목재 검사기관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안 제44조제3의2호)

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8. 31.

• 마감일자 : 2018. 10. 10.

○ 장기요양기관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별지 서식의 문구·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정보공개 범위 확대(안 제26조1항)

- 장기요양기관 정보공개 항목에 장기요양요원의 현 기관 근속연수, 장기요양기관 소방·안전 점검결과 등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 및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확대 보장

나. 장기요양인정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서 수급자 안내사항에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경감비율 수정(50%→60%경감)

다.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안내(안 별지 제6호, 제17호서식)

- “가족요양비”의 경우 별도로 지정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통해 수령 가능함을 장기요양인정서 및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에 안내

라.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급여제공기록지의 복지용구 계약 관련 사항 보완(안 별지 제11호 및 제16호의2서식)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의 복지용구 계약내용에 품목명 외에도 제품명, 표준코드, 판매일(대여기간)을 추가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복지용구 관련 항목별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

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종류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안 별지 제9호, 제10호의2, 제18호, 제20호, 제22호, 제23호, 제26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추가

바. 기타 용어 정비(안 별지 제28호의3, 제35호서식)

- 지방자치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수정

6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8. 8. 31. • 마감일자 : 2018. 10. 10.
- 문화재매매업 상호 변경 및 영업장주소지 이전 시 신고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639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3)

6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8. 8. 31. • 마감일자 : 2018. 10. 10.
- 문화재매매업 상호 변경 및 영업장주소지 이전 시 신고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639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비문화재 확인 업무 처리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 서식 신설(안 제52조의2, 별지 제82호의2서식)
 - 나. 비문화재 확인 관련 서식 등 개정(안 제48조, 별지 제78호 및 제78호의2서식)

62.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8. 31. • 마감일자 : 2018. 10. 10.
-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말고기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돼지·닭·오리)에 말을 추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도매시장 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을 공표하는 때에 1++ 등급의 소 도체의 경우 근내 지방도 및 예측 정육율을 함께 공표하고,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의 육질등급란에 근내지방도 표시란 신설(안 제46조, 별지 제43호 서식)
- 나. 말 도체를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포함하고 등급판정 신청, 도축장 경영자 준수사항,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등 관련 조문 및 서식을 개정(안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3조제4호가목, 별표 4·별표 5, 별지 제36호·제44호의2 서식)
- 다. 기계적 방법으로 도체에 등급을 표시할 경우, 표시 등급의 크기 적용을 개선되도록 개정(안 별표 5)
- 라. 계란의 품질등급 구간 간소화 및 중량규격 표시방법 개선 관련 별표개정 (안 별표 4·별표 5)